

## 연초재해보상금 지급 지침

**제1조(재해보상금의 지급)** 연초경작자(이하“경작자”라 한다)가 연초를 옮겨 심은 후 판매 전에 풍해, 수해, 우박피해, 한해, 화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를 입은 때에는 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경작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재해 보상금 지급신청)** ①경작자가 재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해지의 읍연초생산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당해 재해지가 재해 보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연초재해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포지 토지대장이나 농지원부(본포기 재해 신청시) 1부.
2. 재해포지 식재조사 내역서(본포기 재해 신청시) 1부.
3. 경작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제3조(재해보상금 지급 기준)** 재해보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지급할 보상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연초를 옮겨 심은 후 수확을 완료하기 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경작지의 계약량에 대한 재해량의 비율(이하 “재해율 ㉠”라 한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 지급한다.
2. 연초를 수확한 후 건조완료전의 잎담배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 경작자의 계약량에 대한 재해량의 비율(이하 “재해율 ㉡”라 한다)이 4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 지급한다.
3. 재해경작자의 계약량 건조완료 후 저장중인 잎담배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경작자의 계약량에 대한 재해량의 비율(이하 “재해율 ㉢”라 한다)이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 지급한다.

- 제4조(재해지 조사)** ①이사장은 연초재해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해지 조사 직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 직원만으로 신속한 조사가 어려울 경우, 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 또는 당해 연도 잎담배 구매자에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 ②재해지 조사의 지명을 받은 직원은 재해지 조사에 책임을 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연초재해지 조사서에 의하여 재해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재해조사 직원이 재해지를 조사할 경우에는 조합의 협조를 받아 재해 경작자와 재해지역 경작자 대표를 입회시키고 조사하여야 한다.
- ④ 재해조사 직원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재해조사요령에 의거 조사하고 연초재해조사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제1항에 의거 조사자를 지원받았을 경우 조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재단의 관계규정에 따라 재단에서 지급한다.
- ⑥ 재해지 조사반의 구성은 조사의 객관성을 위하여 2인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한다. 다만 재해의 정도와 협조기관의 지원 상황에 따라 이사장이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재해 보상금지급 대상자 심사)** ①사무국장은 재해지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사업관리팀장, 사업관리담당자, 재해지 조사자, 중앙회 사업국장, 재해지 조합 전무이사로 심사반을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경작하는 연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피해를 고의적으로 크게 한 사실여부
2. 조합 및 중앙회가 지도하는 경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초를 경작한 사실여부
3. 연초피해상황이 지침에 규정된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재해지 조사실적의 타당성 여부 등

②이사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보상금 지급대상 제외)**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해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해발생 전·후 경작지 및 연초에 대하여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를 크게 한 경우
2. 조합 및 중앙회의 경작지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연초를 경작한 경우
3. 당해 연도 연초경작계약서에 기재된 경작자가 준수할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재해보상금 회수)** ①재단은 재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1년 이내에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6조 사유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3조에 따라 재해경작인의 잎담배 판매실적을 확인하여 판매실적이 계약량에서 재해보상금지급수량을 제한 나머지 수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수량만큼 재해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재해보상금 지급대상제외자 통지)** ①이사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재해보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작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제외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통지받은 경작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조사 직원을 지명하여 재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재해보상금 소요액 산출)** 이사장은 재해보상금 소요액을 산출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연초피해율로 재해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보상율과 소요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해보상금 산정 방법)** ①제3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 제1호의 경우

재해보상금 = 재해발생경작지의 앞담배에 대한 예정판매대금 × (“재해율 ㉠” - 50퍼센트)

2. 제3조 제2호의 경우

재해보상금 = 재해경작자의 총 예정판매대금 × (“재해율 ㉡” - 40퍼센트)

3. 제3조 제3호의 경우

재해보상금 = 재해경작자의 총 예정판매대금 × (“재해율 ㉢” - 3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산정방법에 의한 재해발생 경작지의 앞담배에 대한 예정판매대금 및 재해경작자의 총 예정판매대금은 재해 발생 경작지의 계약량 및 재해발생 경작자의 계약량에 당해 연도 공고 평균매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1조(재해보상금 지급액결정과 사전통지)** ①이사장은 재해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조합장에게 통지한다.

②조합장은 이사장이 통지한 금액과 지급방법을 해당경작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해보상금 지급방법)** 이사장이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재해경작자가 희망하는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재해경작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앞담배 매매 선급금을 공제한 후 송금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앞담배 판매실적 제출)** 조합장은 앞담배 판매가 종료된 직후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인의 앞담배 판매실적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서 약 서

소속 :

직책 :

성명 :

상기 본인은 연초재해 조사업무에 임하면서 선량한 조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연초재해보상 지침과 연초재해조사 요령에 의거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해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허위나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서약인 :

①인

(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연 초 재 해 상 황 조 사 서

신청	일자				조사	일자					
	보상금 신청자	성명				조사자	재단	직명		성명	(인)
		주소					조합	지도사		성명	(인)
입회	신청인	(인)			이식일자	재해일자		재해명			
	경작자 대표	(인)			. . .	. . .					
경작지번호	계약사항				품종	재해지 예상수량			피해수량 (kg)	잔량 (kg)	피해율 (%)
	경작지위치		재배형태	면적 (a)		면적 (a)	10a당 (kg)	수량 (kg)			
	읍/면	동/리									
보상제한사항					피해상태						
경작관리 소홀 경작지도 방법 준수 불이행 연초경작계약서 준수사항 불이행					재해 경작지별 사진첨부						
복구조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 연 초 재 해 보 상 금 산 출 표

재해경작자		성명			주소			계약번호				
품 종	경작지 번호	재해지예상수량			피해 잔량 (kg)	피해 수량 (kg)	피해율 (%)	보 상 금 산 출				
		면적 (a)	10a당 (kg)	수량 (kg)				예정 가격 (원/kg)	예 정 판매대금 (원)	보상율 (%)	소요액 (원)	
	계											
보상금 지급		소 요 액(원)				지 급 율(%)			지 급 액(원)			
보상금 지급에 따른 특기사항											재해지 조사서 대조필	

